

## 국립암센터 공용윤리위원회 위탁 협약 관련 안내

### 1 국립암센터 공용윤리위원회 개요

- 본 국립암센터 공용윤리위원회는 「호스피스·완료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(이하 ‘연명의료결정법’) 제14조 제5항에 따라 의료기관윤리위원회 업무를 위탁받도록 보건복지부 지정을 기관입니다.

|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|
|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|
| 명 칭     | 국립암센터 공용윤리위원회        |
| 소재지     |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정발산로 24 |
| 관 할     | 경기                   |
| 담당자 연락처 | 031 - 920 - 0778     |

※ 위탁기관은 본 협약을 한 후 협약서를 연명의료 정보처리시스템(intra.lst.go.kr)에 등록하여야 연명의료중단등결정 및 이행 업무를 개시할 수 있음.

### 2 국립암센터 공용윤리위원회 업무 위탁 범위

- 위탁기관은 국립암센터 공용윤리위원회와의 협약을 통해 연명의료결정법에 따른 연명의료중단등결정 및 이행과 관련한 심의·상담·교육 등 아래의 내용을 제공받을 수 있음

1. **상담** : 위탁 의료기관에서 연명의료중단등결정과 관련하여 환자·환자가족·의료인이 요청하는 사항에 대해 상담을 제공함

▪ 상담 시간 : 월~금(08:00~17:00, 점심시간 12:00~13:00)

▪ 상담 방법 : 온라인 또는 전화 상담, 필요시 방문 상담

① 온라인 상담 : 메일(biomethic@ncc.re.kr)을 통한 상담 의뢰

② 전화 상담 : 031-920-0778

③ 방문 상담 : 기관 요청 시 방문하여 상담 제공

▪ 상담자 : 공용윤리위원회 담당자

▪ 상담 결과에 따라 윤리위원회의 추가 자문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심의 안건으로 상정하여 심의할 수 있음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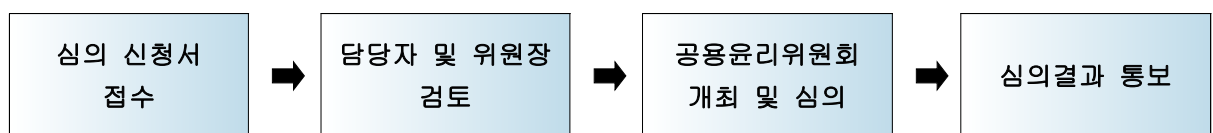
- 상담 후 공용윤리위원회는 해당 기록을 보관(위탁기관의 요구 또는 필요에 따라 기록을 공유 또는 제공할 수 있음)

## 2. 교육 : 위탁 의료기관에서 연명의료와 관련한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연명의료 및 의료윤리 관련 교육을 실시

- 교육 방법 : 집합교육, 방문교육, 온라인(동영상)교육 등
- 교육 내용 : 연명의료결정제도 소개 및 의료기관의 연명의료결정 절차 안내
- 교육 시행 후 공용윤리위원회는 교육 내용 및 이수자 명단 등을 기록하고 관리

## 3. 심의 : 위탁 의료기관에서 연명의료중단등결정 및 이행 관련하여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와 환자가족 또는 의료인이 요청한 사항 또는 담당의사가 이행 거부 시 담당 의사 교체에 관한 사항을 심의함

- 심의 신청 절차



- 회의 개최 기준

- ① 위원회 심의 상정 여부에 대한 판단은 위원장이 하며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에 자문 등을 구할 수 있다.
- ② 회의는 심의 신청 또는 의결이 필요한 안건이 발생한 지 15일 이내 개최한다.

- 회의 방법

- ①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 다만, ‘연명의료중단등 결정 및 그 이행에 관한 사항과 이행을 위한 담당의사 교체’에 관한 사항에 따른 심의 안건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
- ② 위원회는 연명의료윤리문제를 논의하기 위하여 해당 의료인 또는 참고인을 위원회에 참석하게 하여 경위를 진술하도록 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

- 심의 결과 통보

심의 후 공용윤리위원회는 심의 결과를 위탁기관 및 심의 신청자에게 유선으로 즉시 통보하고 이후 위원장 승인된 심의 결과 통보서를 공문과 함께 발송한다. 회의록 및 관련 기록을 보관하고 필요 시, 관련 서류를 제공 한다.

#### 4. 기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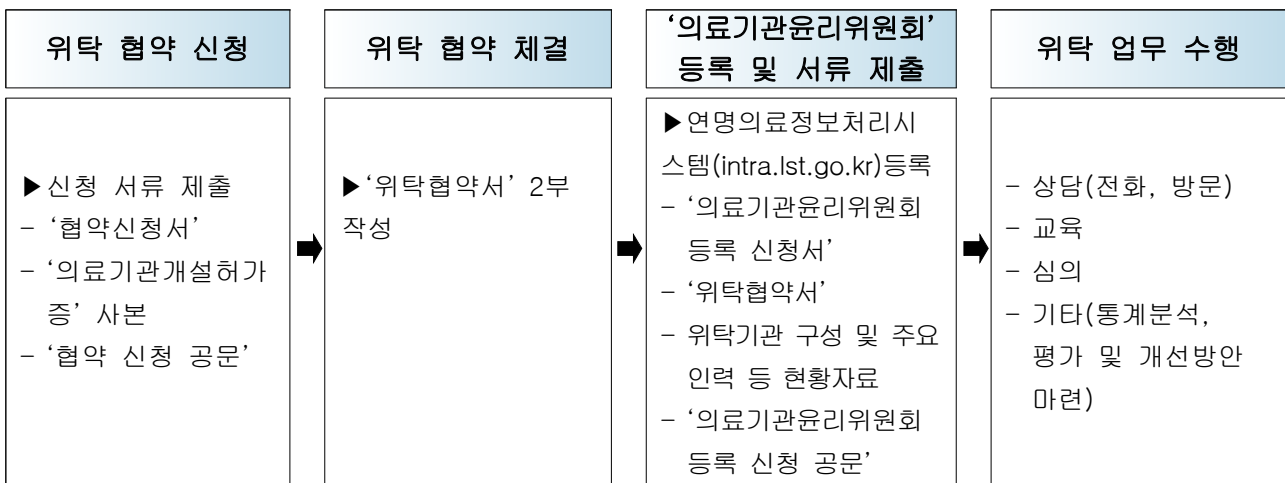
위탁기관에서 시행된 연명의료중단등결정 및 그 이행의 실적 및 통계 분석 등을 통해 평가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한다.

### ③ 협약 체결 기준 및 절차

#### 1. 위탁비용 지원을 통한 협약 신청

- 위탁기관 -> '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' 신청 -> 선정 후 공용윤리위원회 협약 신청
- 신청: 연중 상시, 이메일 접수(med\_nibplst@nibp.kr)
- 문의: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의료기관운영관리팀(02-778-9386)
- 필요서류: 협약 신청 공문, 협약 신청서, 위탁기관 구성 및 주요 인력 등 현황자료

#### 2. 공용윤리위원회 협약 신청



#### ○ 협약 기간

협약 기간은 위탁기관의 기관장과 공용윤리위원회 위원장이 서명한 날로부터 1년을 원칙으로 하며 연장 가능(별도의 요청이 없으면 자동연장을 원칙으로 함)

#### ○ 신청 절차

신규 협약 신청 ➡ 서류검토 ➡ 검토결과 안내 ➡ 협약체결

#### ○ 신청 방법

온라인(이메일) 신청 및 원본서류 우편 제출

○ **협약체결방법**

대면 또는 서면으로 위탁기관장 및 국립암센터 공용윤리위원회 위원장이 각각 날인한 ‘공용윤리위원회 업무 위탁 협약서’ 2부(각 1부씩 보관) 작성

- (제출방법) 원본서류 등기우편 또는 방문 제출
- (주 소)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정발산로24, 웨스턴타워 B동 업무4동 5층  
국립암센터 공공의료사업팀

의료기관윤리위원회 업무 위탁 협약신청서

| 기 관 정 보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|  |
|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|--|
| 의료기관명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|  |
| 기관장 성명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|  |
| 소재지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|  |
| 전화번호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|  |
| 기관구분    | <input type="checkbox"/> 종합병원 <input type="checkbox"/> 병원 <input type="checkbox"/> 요양병원 <input type="checkbox"/> 기타 (            ) |      |  |
| 진료과목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|  |
| 의사 수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병상 수 |  |

| 담 당 자 정 보 |  |     |  |
|-----------|--|-----|--|
| 성명        |  |     |  |
| 소속 및 직위   |  |     |  |
| 전화번호      |  | 이메일 |  |

| 협 약 사 항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협약신청사유  | 의료기관윤리위원회 자체 설치 및 운영이 어려워 공용윤리위원회와 협약을 체결하여 연명의료결정제도를 시행하기 위함. |
| 협약신청기간  | 협약체결일 ~ 협약체결일로부터 (    )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
위와 같이 의료기관윤리위원회 업무 위탁 협약 신청서를 제출합니다.

신청일자: 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년       월       일

협약신청의료기관장: \_\_\_\_\_(인)

국립암센터 공용윤리위원회 위원장 귀하

# 공용윤리위원회 업무 위탁 협약서

국립암센터 공용윤리위원회(수탁 공용윤리위원회)와 00 의료기관(위탁기관)은 의료기관윤리위원회 업무의 위탁 수행을 위하여 상호 협력할 것을 합의하고, 다음과 같이 업무협약을 체결한다.

## 제1조 【목적】

본 협약서는 「호스피스·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 의료결정에 관한 법률」 제14조 제5항에 따른 의료기관윤리위원회 업무의 위탁 수행과 관련하여 위탁기관과 수탁 공용윤리위원회 간 구체적 권리와 의무를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
## 제2조 【위탁 업무】

- 가. 위탁기관의 환자 및 환자가족이 요청한 연명의료중단등결정에 관한 상담
- 나. 위탁기관에서 연명의료중단등결정 및 그 이행에 관하여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와 그 환자가족 또는 의료인이 요청한 사항에 관한 심의
- 다. 위탁기관에서 요청한 법 제19조 제3항에 따른 담당의사 교체에 관한 심의
- 라. 위탁기관의 의료인에 대한 의료윤리교육
- 마. 위탁기관의 연명의료중단등결정 및 그 이행에 관한 통계 분석, 평가 및 개선방안 마련

### 제3조 【공용윤리위원회의 의무】

공용윤리위원회는 위탁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되, 해당 업무를 수행할 시간, 장소, 방법 등 위탁 업무의 수행을 위한 구체적 계획을 협약 당시 위탁기관에게 제공하여야 한다.

### 제4조 【위탁기관의 의무】

위탁기관은 위탁 업무의 수행이 원활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공용윤리위원회가 제시한 계획을 기관 내에 안내하고, 소속 의료인들의 참여를 독려하는 한편, 공용윤리위원회가 협약 이행을 위하여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을 요청하는 경우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.

### 제5조 【위탁 비용】

공용윤리위원회는 전년도 공용윤리위원회의 운영실적을 고려하여 차등 지원받은 위탁비용을 통하여 위탁기관의 업무를 성실히 지원하여야 한다.

### 제6조 【비밀 유지】

양 협약기관은 본 협약 또는 법령 등에 따른 경우를 제외하고는 상호 동의 없이 본 협약과 관련한 업무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를 외부에 공개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해서는 안 된다.

### 제7조 【효력 및 유효기간】

본 협약은 양 협약기관의 대표자가 서명한 날로부터 1년간 유효하다. 단, 유효기간 만료일 이전까지 해지에 대한 별도의 서면통보가 없는 경우 자동적으로 1년씩 그 효력이 연장된다.

## 제8조 【협약의 해지】

협약에 따른 의무 위반이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경우 일방에 의해 협약이 해지될 수 있다. 이 경우, 해지 기관은 그 사유를 공용윤리위원회 운영협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

위탁기관과 수탁 공용윤리위원회는 본 협약이 유효하게 체결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해 협약서 2부를 작성하여 서명한 후 각 1부씩 보관하고 사본 1부를 공용윤리위원회 운영협의회 사무국에 송부한다.

년      월      일

국립암센터  
공용윤리위원회 위원장

00 의료기관의 장

---

---